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(7급 5명),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(7급 2명)과 병역기피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0명(8급 7명, 9급 3명)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28. ~ 2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본문 중 “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을 “정원”으로 한다.

제7장(제30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1,637”을 “1,64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37”을 “1,64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626”을 “1,634”로 한다.

별표 6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7조제1항, 제7장(제30조)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<u>정원</u> 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2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 <u>정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제7장 한시정원</u>	<u><삭 제></u>
제30조(한시정원) 병역판정검사 중 <u>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.</u>	<u><삭 제>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4]

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총 계	<u>1,637</u>	<u>1,645</u>	+8
일반직 계	<u>1,637</u>	<u>1,645</u>	+8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626</u>	<u>1,634</u>	+8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4